

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매년 상·하반기에 한 차례씩 열리는 정기회의 개최일에 관한 규정을 그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정비하고,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수렴 수요가 많은 12월 초순으로 변경하며, 정기회의 개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함
- 비교적 경미한 사항으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 의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

3. 주요내용

-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정기회의 개최일 중 “4월 둘째 주 월요일”을 “4월 두 번째 월요일”로, “11월 넷째 주 월요일”을 “12월 첫 번째 월요일”로 각 변경하고, 위 각 개최일이 공휴일인 경우 “다음 날”에 개최하던 것을 “다음 월요일”에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

함(안 제5조제2항)

-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9조제3항 신설)

4.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규칙개정안

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(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)”을 “(공휴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)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“4월 둘째 주 월요일”을 “4월 두 번째 월요일”로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“11월 넷째 주 월요일”을 “12월 첫 번째 월요일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5조(회의의 소집 및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정기회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날(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)에 개최한다.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1. 4월 둘째 주 월요일</p> <p>2. 11월 넷째 주 월요일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9조(정족수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| <p>제5조(회의의 소집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(공휴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) ----- -----.</p> <p>1. 4월 두 번째 월요일</p> <p>2. 12월 첫 번째 월요일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정족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.</u></p> |

<의안 소관 부서명>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실 | |
| 연락처 | (02) 3480 - 1216 |